

03

2023년 지역연계 정서함양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역	기관명	특화사업	연락처
전주	가람통합예술연구소	음악창작, 악기연주	063-224-0316
	창의예술연구회	조형예술테라피	010-4811-7405
	나무사랑가구	목공문화 체험활동	010-6611-4162
	마음상담코칭센터	원예치료/농업현장체험	063-228-5936
	씩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진로상담/진로 및 직업체험	063-225-1400
	아중리맘공동체	자기이해/진로탐색/직업체험	010-3682-3117
	윙티학교	목공체험	063-285-4344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진로검사 및 체험	063-903-7179
군산	코시나	푸드테라피/공예프로그램	010-8841-3191
	군산공예협동조합	공예체험/미술심리테라피/심리상담	010-2900-1455
익산	동지아동극단	성격유형검사/놀이프로그램/역할극	010-4656-3773
	모꼬지공예문화개발원	진로체험(공예, 문화예술)	010-7160-3307
	예술심리상담센터 마음길	개인상담/진로상담/심리검사	063-855-1275
	예품대한인재양성교육개발원	인성프로그램/진로체험	063-858-0798
	꿈버리늘배움협회	진로상담/공예문화예술체험	063-843-0122
	문화예술공동체 치유 앤 성장	미술치료/음악치료/심리상담	063-838-5575
	내장산생태탐방원	숲치유/예코 트레킹/생태 놀이	063-538-1700
	생명평화마중길	숲길 치유 걷기/물길 치유 걷기	063-282-0185

04

2023년 학업중단 위기 학생 복귀 지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순	지역	센터명	연락처	비고
1	전주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4-1388	총괄
1	전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7-1005	
2	군산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8-2870	
3	익산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853-1388	
4	정읍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1-3000	
5	남원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3-1977	
6	김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5-0112	
7	완주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1-3303	
8	진안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33-0017	
9	무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4-6688	
10	장수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1-2000	
11	임실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640-3030	
12	순창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652-1388	
13	고창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3-6793	
14	부안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0-4518	

학업중단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05

학업중단숙려제
Q & A

학업중단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에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교는 대상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지만, 학생은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2883호, 2022.8.30.))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있나요?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인정 유학, 인정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경우, 학교폭력·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학업중단숙려제 1회 사용 후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학업중단숙려제 1회 실시 후 숙려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 실시할 때와 같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후 내부결재를 득하고 당해 학년도 숙려기간 허용 범위(7주)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숙려제를 연장하는 경우 앞에 이어 같은 횟수로 처리합니다.

장기 결석생이 자퇴(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숙려제의 시행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기 결석한 학생도 숙려기간을 두어야 합니다(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아 학교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기관에서는 학업중단 후 학습 및 취업, 복교에 관하여 자세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고,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복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학업중단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담,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운영기간 최소 1주 ~ 최대 7주까지(주 단위 운영), 당해 학년도 2회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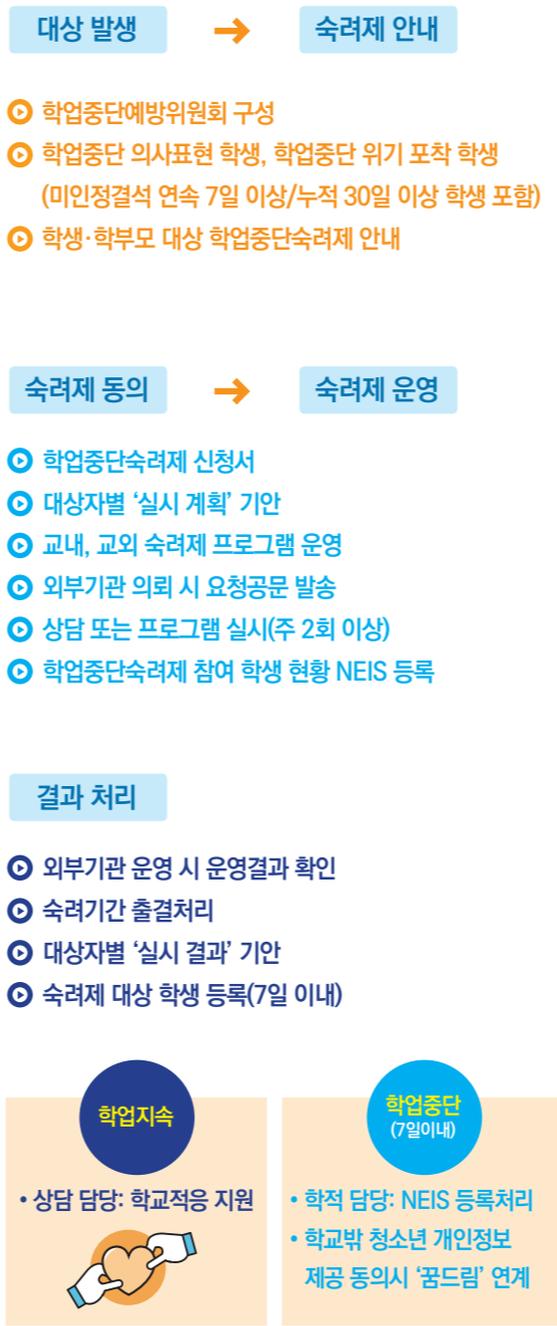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유예 신청서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발견했거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으로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기타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 운영기관

위기 원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상담·치료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등
	진로상담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센터 등
학교 부적응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기관, 개인사업장 등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기타	문화·예체능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여행	학교Wee클래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등

○ **운영주체:** 학교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 규칙 기재

운영 흐름도



나이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

